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5.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2. 26.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토지관리계장 박 재 현)

가. 제 출 이 유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이내로함.(안, 제2조 제1항)
- 위원장은 필요한경우에는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 제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전 재)

- 동 개정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확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임.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공시지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정 및 인력의 전문화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 : 동 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박재현 토지관리계장) : 예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으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김유현 위원) : 금융기관 임직원을 동 위원회에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그들이 전문지식이 있는가?
- 답변(박재현 토지관리계장) : 은행에서 자금 대출시 담보물 취급을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윤동현 위원) : 안 제8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회위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되어 있는데 동지가심의회가 무엇인가?
- 답변(지영창 재무국장) :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에서 1차 심의후 구청에 올립니다. 구위원회에서 심의때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 질문(윤동현 위원) :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작년에는 얼마나 되는가?
- 답변(박재현 토지관리계장) : 작년에 이의신청건수는 540건이며 이중 약 30%가 시정되었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년월일 : 1994. 2. 25.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 골자

가.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함.(안 제2조 제1항)

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의 2)

3. 개정 근거

○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제14조

○ 지적 58323-30 ('94. 1. 8)호 : 준칙 (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예산 수반 여부 : 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조치 필요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1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중 “5인”을 “9인”으로, 동항 제2호중 “6인”을 “10인”으로 각각 한다.

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금융기관의 임직원
- 5. 공인중개사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 심의회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20인이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③
1. 관계공무원중 5인이내	1.9인.....
2. 제3조에서 정한자중 6인이내	2.10인.....
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위촉)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농협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u>	4. <u>금융기관의 임직원</u>
5. <u>부동산 중개업자</u>	5. <u>공인중개사</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실의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 3. 2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1994. 4. 1.
- 다. 상정 일자: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영찬)

- 가. 제안이유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게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 추가(안, 제3조, 제4조)
 - 세입징수포상금 관련 서식을 별표로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진재)

- 동 조례안은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게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 징수한 경우등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들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대부를 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사용 수익을 하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만 부과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가?
- 답변(김영찬 재무과장): 아닙니다. 부과하여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